4 주요예산 집행결과

4-1 |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우리 전라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008,136	18,446	0.17	
일반운영비		12,743	0.11	
여 비		2,692	0.02	
업무추진비		1,669	0.02	
직무수행경비		818	0.01	
자산취득비		523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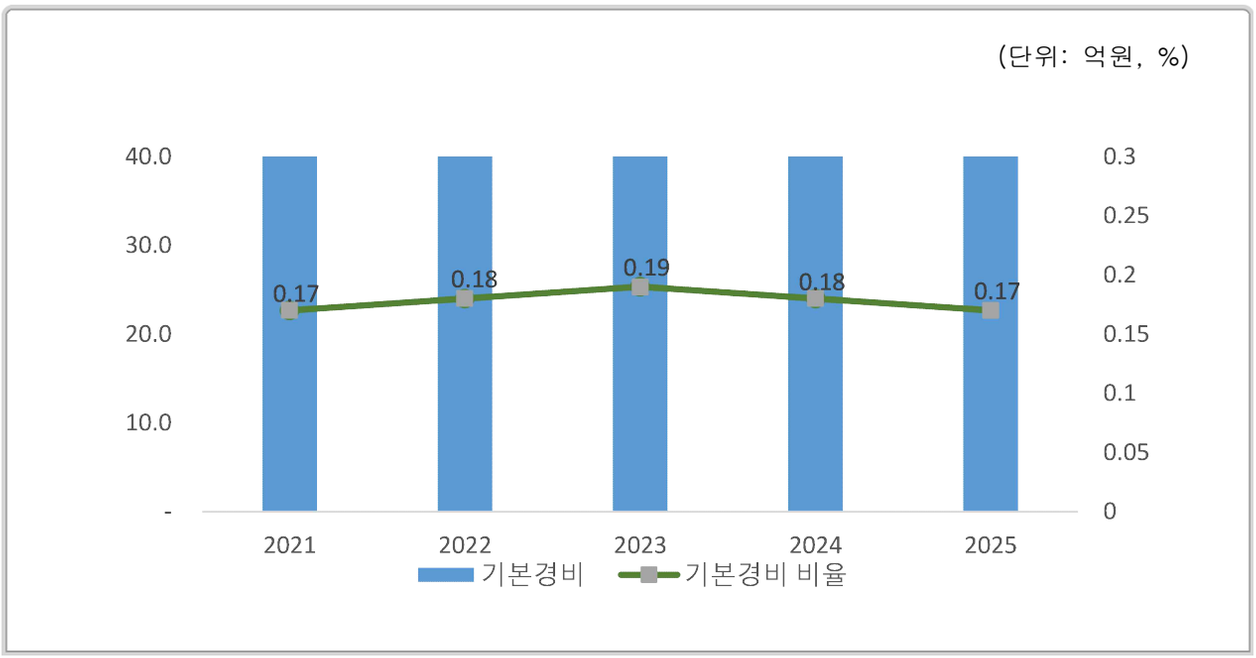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9,933,997	9,826,872	9,708,350	9,907,941	11,008,136
기본경비	17,220	17,670	18,834	18,109	18,446
비율	0.17	0.18	0.19	0.18	0.17

최근 5년 기본경비 규모 및 비율



우리 도의 올해 기본경비는 18,446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17%수준)이며 작년보다 세출결산액 대비 0.01%p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4-2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5.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39,089	38,827	0	9,878	9,758	0	165	164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3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전라남도의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0,081	2,715	2.47	
인건비(보수)		2,210	2.01	
연금부담금 등		505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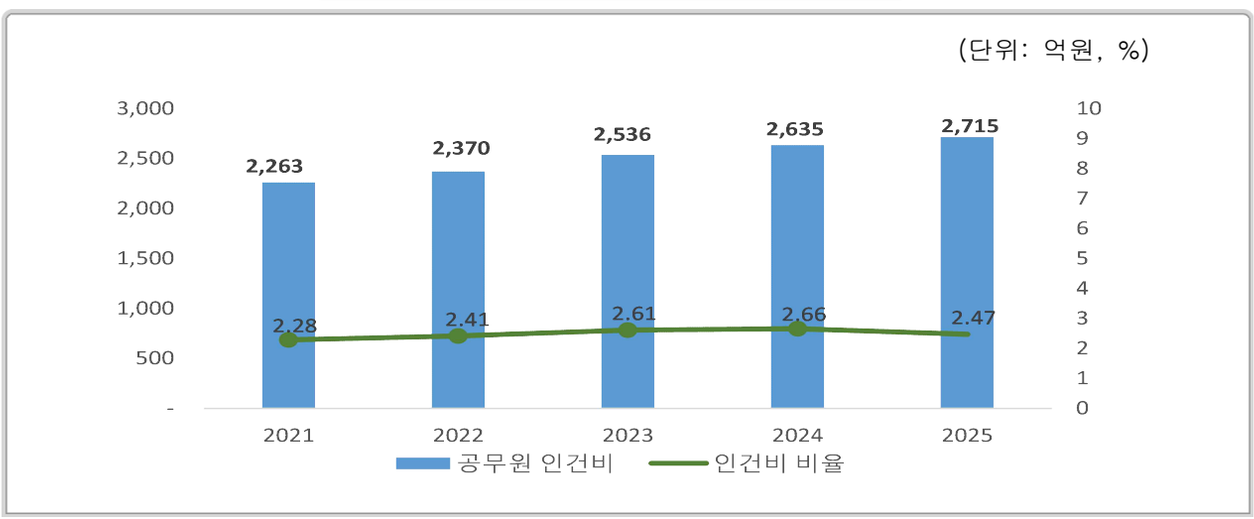
- 인건비(보수)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포함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99,340	98,269	97,084	99,079	110,081
인건비(B)	2,263	2,370	2,536	2,635	2,715
인건비비율(B/A)	2.28	2.41	2.61	2.66	2.47

최근 5년 공무원 인건비 규모 및 비율



우리 도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47%(전년 대비 0.19%p감소)입니다.

4-4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전라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008,136	2,755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8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69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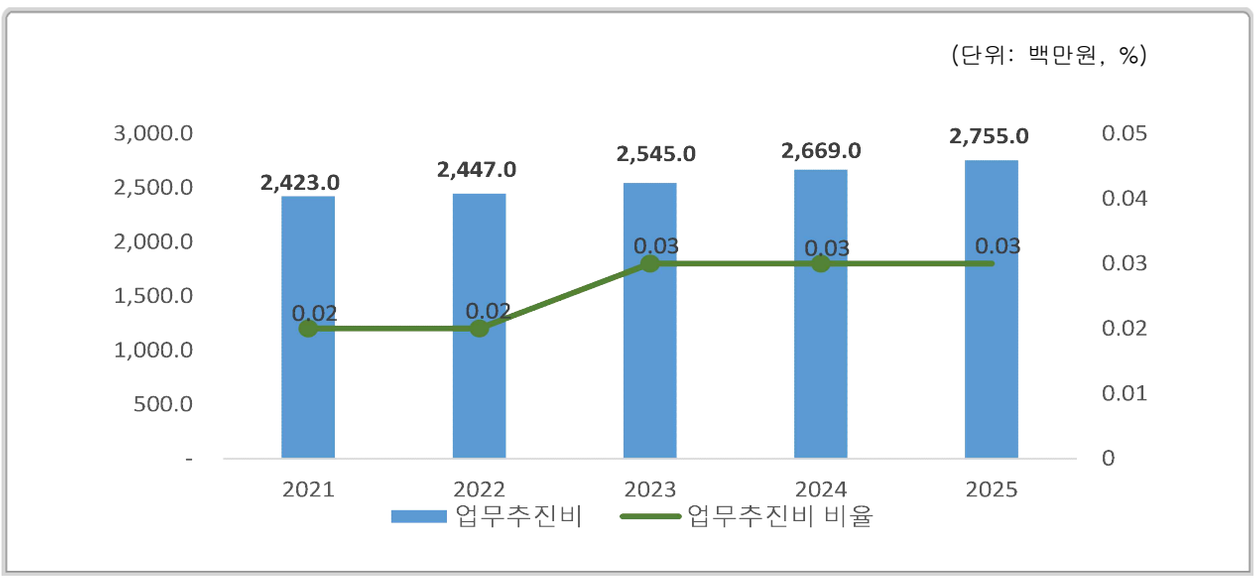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9,933,997	9,826,872	9,708,350	9,907,941	11,008,136
업무추진비	2,423	2,447	2,545	2,669	2,755
비율	0.02	0.02	0.03	0.03	0.03

최근 5년 업무추진비 규모 및 비율



❖ 20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고

4-5 |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25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 [별지 2] 참고

4-6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전라남도의 202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008,136	5,835	0.05	61	95,6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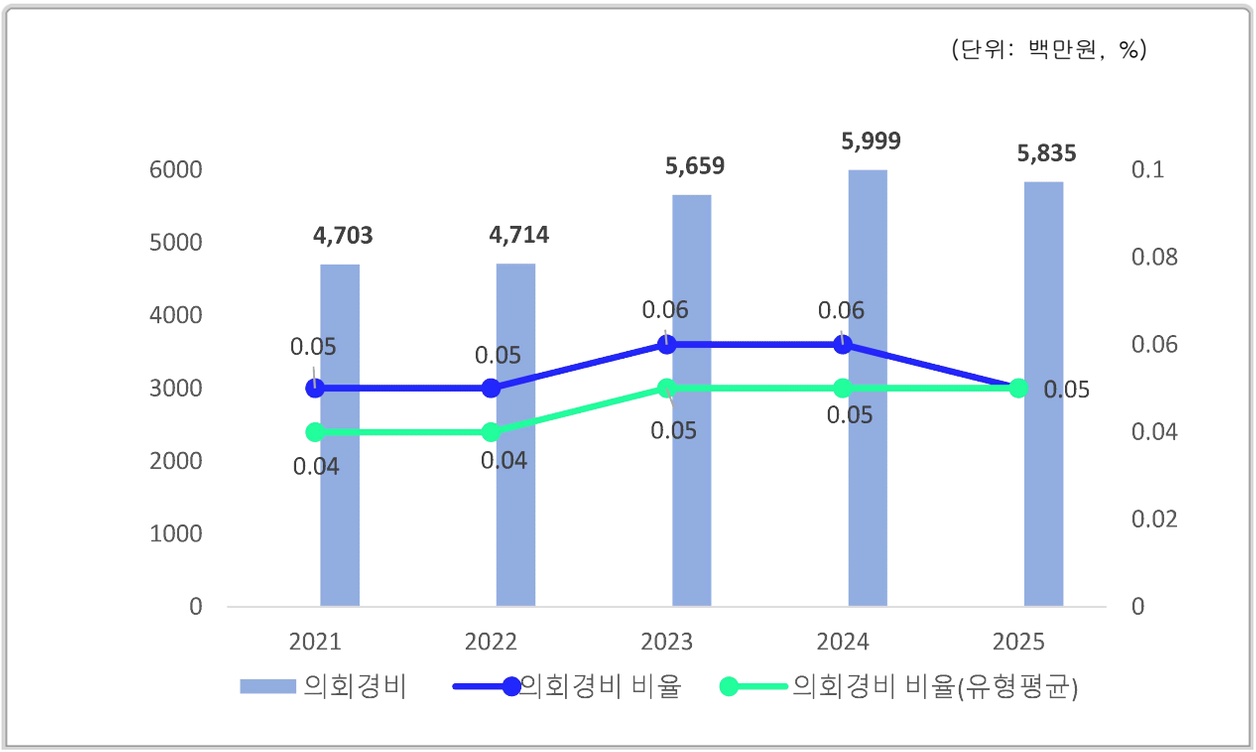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9,933,997	9,826,872	9,708,350	9,907,941	11,008,136
의회경비	4,703	4,714	5,659	5,999	5,835
의원 정수	58	61	61	61	6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5	0.05	0.06	0.06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81,091	77,276	92,774	98,348	95,653

최근 5년 지방의회경비 규모 및 비율



우리 도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95,653천만원입니다.(전년대비 2.7%감소). 주요 감소 이유는 '25년 의원국내·국외여비 집행액이 전년대비 147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7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우리 전라남도의 2025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8	61	2,09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5.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28
2025.5.27.~5.28	쌀 의무수입 재협상 국제협력	일본	1	1
2025.6.18.~6.24.	경제.관광.문화 관련 정책과 인프라 현황 시찰 및 우수사례 발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0 (3)	20
2025.6.27.~7.3.	선진 방재 및 안전시설 운영 사례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조사	일본	10 (4)	29
2025.8.3.~8.8.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과 미래교육 대응 등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9 (4)	25
2025.9.22.~9.26.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발굴 등	일본	1	2
2025.9.22.~9.28.	농업위기 대응을 위한 일본 쌀 산업 정책 벤치마킹 등	일본	9 (3)	22
2025.12.18.~12.23.	중국 국제교류 출장	중국	11 (6)	24
2025.12.17.~12.19.	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추진	일본	2 (1)	3
2025.12.26.~12.30.	목재활용현황 등 조사 추진	일본	1	3

※ 202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5년 우리 전라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194	11,176	1,470	1,364	9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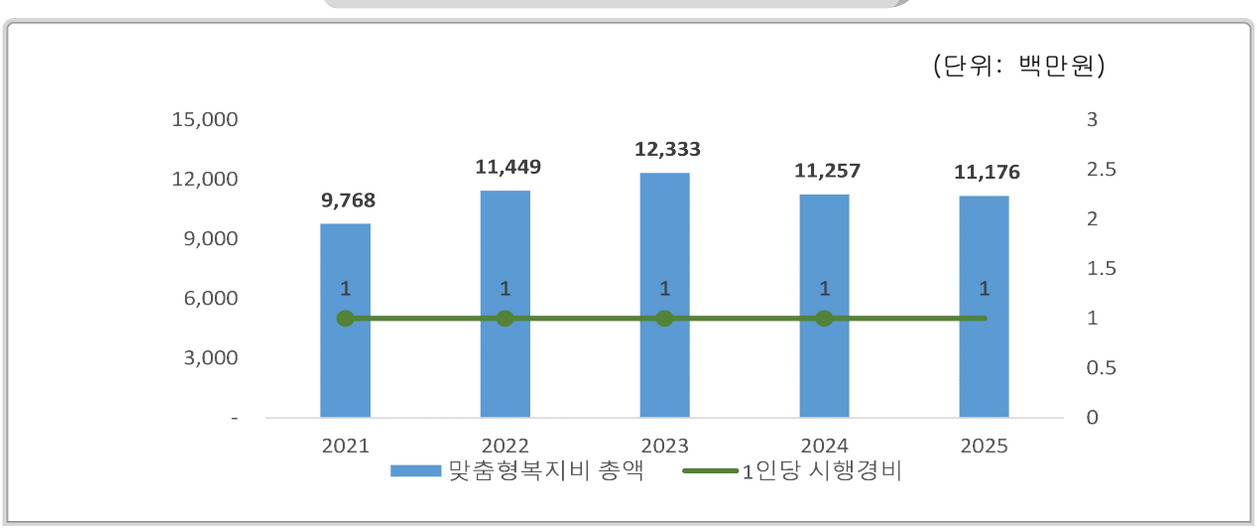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인원 (A)	7,516	7,731	8,353	8,046	8,1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9,768	11,449	12,333	11,257	11,17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5	107.31	105.46	97.84	92.79

최근 5년 맞춤형복지비 현황



우리 도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1,176백만원(작년 대비 81백만원 감소)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148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9 |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 해당없음

4-10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 전라남도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110,081	**16**	**0.01**	**651**	**0.59**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 도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6억원으로 작년대비 82.4% 감소하였습니다.

4-11 | 연말지출 비율

◪ 우리 전라남도에서 202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204	1,274	30.31
시설비 (401-01)	3,909	1,202	30.76%
감리비 (401-02)	284	70	24.74%
시설부대비 (401-03)	6	2	26.1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	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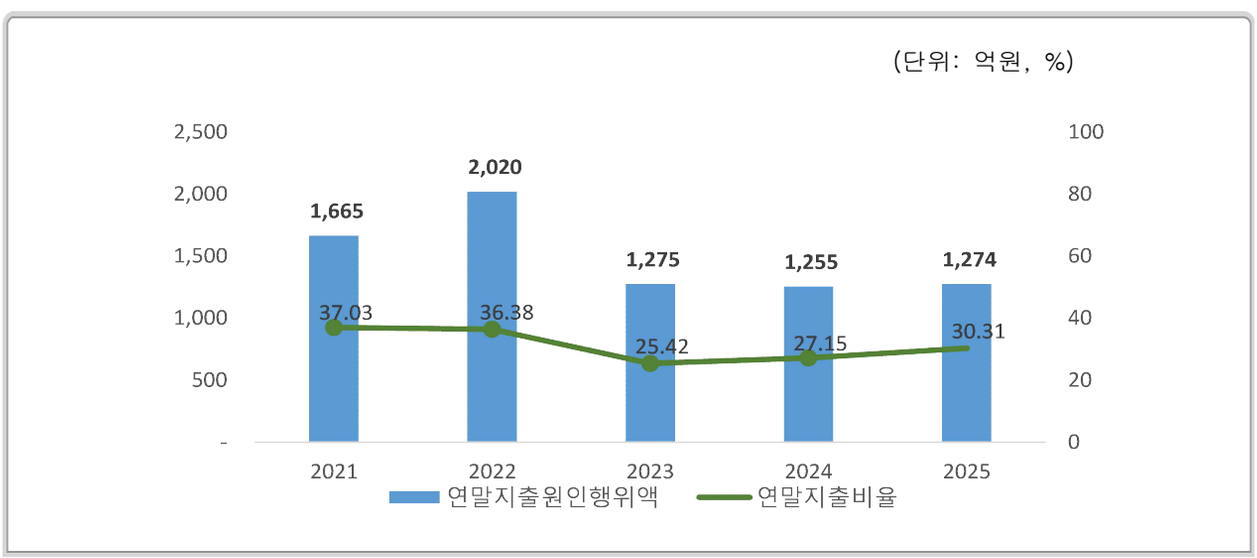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A)	4,496	5,552	5,016	4,621	4,20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65	2,020	1,275	1,255	1,274
비율(B/A)	37.03	36.38	25.42	27.15	30.31

최근 5년 연말지출 현황



우리 도의 '25년 11~12월 지출금액은 1,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하였습니다.

4-12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202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1,100	3,700	3,700	
제1금고	농협은행	'24.01.01~ '26.12.31.	8,100	2,700 (당초)	2,700	2,700 ('25.3월)
제2금고	광주은행	'24.01.01~ '26.12.31.	3,000	1,000 (당초)	1,000	1,000 ('25.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회계법」 제정('26.5.29.)으로 해당내용은 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

※ 예산편성액 : 3,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700백만원('25.3)

❖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